

U-City보안감시 기술협력센터 규정

□ 제정 : 2008. 09.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연구센터는 수원대학교 부설 U-City 보안감시 기술협력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 본 센터는 U-City 안전성의 향상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U-City 보안감시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소재지) 본 센터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5조(규정의 변경 등) 본 센터 규정의 변경 및 해산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6조(조직) 본 센터는 제3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센터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직을 두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 가. 행정지원실
2. 연구과제 심의위원회
 - 가. 연구기획실
3. 협력위원회
 - 가. 산학협력실
4.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 가. 장비관리실
5. 평가위원회
6. 기초기술연구부
7. 협력기술지원부
8. 실용기술연구부

제7조(임원) ① 본 센터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 1명
2. 부장 : 3명
3. 실장 : 4명
4. 위원회위원 : 약간명

② 센터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본 센터를 대표하고 소관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③ 부장 및 실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센터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소원) ① 본 센터 소원은 연구원, 연구조교, 연구조수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 센터의 연구목적에 필요한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외부인사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센터장이 연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연구 조교, 연구조수 및 직원은 필요에 따라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전임교원을 제외한 본 센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고문) 본 센터는 센터장 제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1조(구성)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 과제책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경기도 및 화성시 담당자, 산학연 전문가들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사업 계획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예산 및 결산
4. 연구과제 및 참여기업의 선정
5. 기타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연구과제 심의위원회

제14조 본 센터의 연구과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5조(구성)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임교원, 경기도 및 화성시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16조(기능)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의 선정, 참여기업의 지원, 연구과제의 진행 등 센터 연구의 운영방향과 진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7조(회의) ① 연구과제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연구과제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협력위원회

제18조 본 센터의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를 둔다.

제19조(구성) 협력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 연구과제책임자, 기업대표들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0조(기능) 협력위원회는 센터내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관련된 연구기관과 산업체와의 공동협동연구, 인적 교류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상호간의 협력을 관장한다.

제21조(회의) 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제22조 본 센터의 장비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3조(구성)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 연구과제책임자, 기업대표, 산업계 전문가들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4조(기능)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는 센터의 신규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구매의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고, 장비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제25조(회의) ①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평가위원회

제26조 본 센터의 사업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7조(구성) 평가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 경기도 및 화성시 담당자, 산업계 전문가들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28조(기능) 평가위원회는 센터의 주요 사업 진행 상황, 센터의 중장기 목표와 연구결과의 연관성, 지역산업 기여도 등을 분석 및 평가한다.

제29조(회의) ①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재정 및 예·결산

제30조(재정) ① 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경비로 충당한다.

1.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지원금
2. 화성시 및 참여기업의 지원금
3. 본교의 운영지원비

4. 교내·외 연구비 및 용역비 등의 연구보전비

5.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② 전항 제 4호의 연구보전비 요율은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운영에 관한 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사업계획) 본 센터의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 결산) 센터장은 매년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을 받아야한다.

제34조(연구비 등) ① 본 센터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 및 연구용역비, 기타 모든 수입금은 본 센터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예산 내용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연구비를 수령한 본 센터 관계자는 연구비 총 수령액에 대한 요율을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센터 운영을 위한 연구보전비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본 센터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말 이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5조(해산 후 재산귀속) 본 센터가 해산할 경우 그 재산, 권리, 의무는 수원대학교에 귀속된다.

제9장 보 칙

제36조(운영세칙)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37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세부운영지침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